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12.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13회 의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92.12.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가. 제출이유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포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 ④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⑤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⑥ 기타 잡수입

2)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②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④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91. 12.14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에 대한 세부준칙을 마련, 각 구청에 시달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시설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한 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윤명규의원) : 세입이 6가지가 있는데 항목별 예상수입은?

답변(지역교통과장 정영모) : 노외주차장 수입등은 현재 없으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정되며, 금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전부인데 1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1992.10.29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자동차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포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5)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6) 기타 잡수입

나. (세출)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 (4)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나. 예산조치수반여부 : 별도 예산소요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마포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에 세입으로 한다.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 5.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6.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8.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 9.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 4.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가분부터 적용한다.